

현 행	개 정 (안)
<p data-bbox="252 663 400 701"><신 설></p> <p data-bbox="252 936 400 974"><신 설></p> <p data-bbox="284 1570 839 1966">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저축은행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이자·지연배상금의 수령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저축은행이 지</p>	<p data-bbox="906 342 1461 640">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0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p> <p data-bbox="906 667 1461 913">⑥ 저축은행이 제5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를 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통지 내용, 통지 방법 및 예외 사유 등 제반 규정을 따른다.</p> <p data-bbox="906 940 1461 1541">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금융 채무자의 계좌별 대출원금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본인과의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p> <p data-bbox="906 1570 1461 1966">⑧ ----- 제5항 ----- ----- ----- ----- ----- ----- -----</p>

현 행	개 정 (안)
<p>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하는 것으로 한다.</p> <p><u><신 설></u></p>	<p>----- -----</p> <p>제7조의2 (채무조정 요청) 개인금융 채무자의 계좌별 대출원금이 3천만원 미만인 채무자가 대출채무를 연체한 경우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축은행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8조(기한의 이익상실의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p> <p>① ~ ④ (생략)</p> <p><u><신 설></u></p>	<p>제8조(기한의 이익상실의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 등에 대한 통지)</p> <p>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제7조 제5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저축은행은 제7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보증인에 대해서도 통지하여야 한다.</p>
<p>제9조(할인어음의 환매채무) ① ~ ③ (생략)</p> <p>④ 제1항, 제2항의 경우에도, 제7조 제5항을 준용한다.</p>	<p>제9조(할인어음의 환매채무)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p> <p>제8항 -----.</p>
<p>제18조(통지의 효력) ① (생략)</p> <p>② 채무자가 제16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되거나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p>	<p>제18조(통지의 효력)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p>

현 행	개 정 (안)
<p>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본다.</p> <p>③ (생략)</p>	<p>----- ----- ----- ----- 보며, 개인금융채무자의 계좌별 대출원금이 3천만원 미만인 개인금융채무자의 기한전의 채무변제 통지에 대해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③ (현행과 같음)</p>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이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과 거래처(이하 "채무자"라 한다)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저축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매체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영업시간중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제1조(적용범위) ① 이 약관은 저축은행과 채무자(차주·어음할인신청인·지급보증신청인·매출채권양도인 등 저축은행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이의 계 또는 부금의 급부 및 어음대출·어음할인·증서대출·지급보증·매출채권거래 기타 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②이 약관은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저축은행이 제3자와의 여신에 관한 거래에서 취득한 경우에 그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항, 제15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2003. 3. 3>

③이 약관은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저축은행의 본·지점과 채무자의 본·지점 사이의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 거래와 채무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제2조(어음채권과 여신채권) 채무자가 발행하거나 배서·보증·인수한 어음에 의한 여신의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

제3조(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①이자·할인료·보증료·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 한다.)의 율·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저축은행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전에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윤년의 경우 1년을 366일로 보고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3. 3. 3, 2013.5.31, 2014.8.20>

②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시 채무자가 다음 각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3. 3. 3>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저축은행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저축은행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제2항 제1호를 선택한 경우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저축은행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변동요인이 해소된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지체없이 해소된 상황에 부합하도록 그 율을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03. 3. 3>

④제2항 제2호를 선택한 경우 이자 등의 율에 관한 저축은행의 인상·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신설 2003. 3. 3>

⑤채무자가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내에서 저축은행이 정한 율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및 기타 이에 상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그 율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2014.8.20>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개인금융채무자의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본인과의 기존 약정에 따른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신설 2024.10.10>

⑦저축은행이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인 때에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하는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된다. <개정 98.7.10, 2003. 3. 3, 2024.10.10>

⑧제4항 및 제5항, 제7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저축은행은 그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간 해당 영업점 및 저축은행이 정하는 전자매체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신설 2003. 3. 3, 2024.10.10>

⑨채무자는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변경된 이율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8조에 의한 통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개월내에 서면으로 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제7항에 의하여 변경된 계산방법 등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해야 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98.7.10, 개정 2003. 3. 3, 2024.10.10>

⑩제9항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저축은행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 등을 적용하기로 한다. <신설 98.7.10, 개정 2003. 3. 3, 2024.10.10>

제4조(비용의 부담) ①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2011.4.1>

1. 채무자·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저축은행의 채권·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등을 말함]에 관한 비용 <개정 2003. 3. 3, 2011.4.1>

(2. 삭제 <2003.3.3>)

2.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비용 <개정 2011.4.1>

(4. 삭제 <2003.3.3>)

3.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비용 <개정 2011.4.1>

②제1항에 의한 비용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아서, 저축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한다. 채무자가 이를 곧 갚지 아니하는 때에는 저축은행이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조에 의한 상사법정이율 범위내에서 약정금리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야 한다. <개정 2003. 3. 3, 2011.4.1, 2014.8.20>

③저축은행은 대출약정시 채무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정이자 외에 담보대출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03. 3. 3>

제4조의2(대출청약 철회) ①「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에 의한 일반금융소비자인 채무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및 관련규

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② 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른 소비자의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청약 철회에 대해 설명하고 소비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1.3.12.>

③ <삭제 2021.3.12.>

④ <삭제 2021.3.12.>

⑤ <삭제 2021.3.12.>

⑥ <삭제 2021.3.12.>

⑦ <삭제 2021.3.12.>

[본조신설 2016.12.19.]

제4조의3(위법계약의 해지) 채무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3.12.]

제5조(자금의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저축은행과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기타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8.25>

제6조(담보) ①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은 채권보전을 위한 저축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및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② 담보목적물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 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로서 직접변제에 총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제13조에 준하여 총당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다.

“채무자 등”은 채무자, 설정자,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말한다.

1.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2.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공정시세가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아도 공정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 <개정 2003. 3. 3, 2006.7.10., 2016.12.19., 2023.2.20.>

③임의경매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채무자 등과 채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해관계인이 채권자가 산정한 예상매각대금 이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야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담보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담보권실행의 방법
2. 피담보채권의 금액
3.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
4. 담보목적물로서 직접 변제에 총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려는 이유 <신설 2016.12.19>

④채무자가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저축은행이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동산·어음 기타의 유가증권을,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저축은행이 계속 점유하거나 제2항 내지 제3항에 준하여 추심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한다. <개정 2016.12.19>

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①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저축은행은 채무자에게 저축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다(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음). 이 경우, 저축은행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가 도달하면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시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03. 3. 3, 2023.11.29>

1. 저축은행에 대한 예치금 등 각종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재산이 존재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개정 2003. 3. 3, 2023.11.29>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호의 저축은행에 대한 예치금 등 각종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신설 2003. 3. 3> <개정 2023.11.29>
3. 파산·회생·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개정 2006.7.10, 2017.8.11.>
4.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전 납부고지서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5.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6. 채무자의 과점주주나 실질적인 기업주인 포괄근보증인의 제예치금 기타 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제1호의 명령이나 통지가 발송된 때

②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다만, 저축은행은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대출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개정 2014.8.20>

1.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로부터 계속하여 1개월(가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간 지체한 때<개정 2015.10.2.>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가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개정 2015.10.2.>

③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저축은행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저축은행은 서면으로 변제·압류 등의 해소·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이상으로 저축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저축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1. 저축은행에 대한 수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3. 3. 3>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개정 2003. 3. 3>
3. 채무자의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가압류통지가 발송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 <신설 2003. 3. 3>

4.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저축은행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

(4. 삭제 <01.6.10>)

5. 제5조, 제19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개정 2003. 3. 3>

6. 청산절차 개시,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관련기업의 도산, 회사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된 때

7.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대위변제 대지급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가 등록된 때 <개정 2003.3.3, 2006.3.2, 2006.7.10>

④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저축은행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이상으로 저축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저축은행에 대한 당해 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1. 제6조제1항, 제15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3. 3. 3>

2.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저축은행을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저축은행에 손해를 끼친 때, 시설자금을 받아 설치·완공된 기계·건물 등의 담보제공을 지체하는 때, 기타 저축은행과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보증인이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3항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당한 기간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3. 3. 3>

⑤ 개인금융채무자의 계좌별 대출원금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 등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합니다)이 정하는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저축은행은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0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24.10.10>

⑥ 저축은행이 제5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를 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통지 내용, 통지 방법 및 예외사유 등 제반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4.10.10>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금융채무자의 계좌별 대출원금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본인과의 기존 약정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신설 2024.10.10>

⑧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저축은행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이자·지연배상금의 수령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저축은행이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24.10.10>

제7조의2(채무조정 요청) 개인금융채무자의 계좌별 대출원금이 3천만원 미만인 채무자가 대출채무를 연체한 경우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축은행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4.10.10>

제8조(기한의 이익상실의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 등에 대한 통지) ①제7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때, 저축은행은 동조 제1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2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저축은행이 인지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9>

②제7조 제3항 또는 제4항 각호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저축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9>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7조 제8항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인의 동의가 없어도 계속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부활된 채무자의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한의 이익 부활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9>

④제7조 제2항 각호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저축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19.>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제7조 제5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저축은행은 제7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보증인에 대해서도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4.10.10>

[본조신설 2003 .3 .3]

제9조(할인어음의 환매채무) ①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저축은행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어음면 기재금액에 의한 환매채무를 지고 곧 변제하기로 한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이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환급하기로 한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게 제7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되거나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②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저축은행이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이상으로 저축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어음의 환매채무를 지고 곧 변제하기로 한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이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환급하기로 한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7조 제3항, 제4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 관하여 제7조 제3항, 제4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③제1항, 제2항에 의한 채무를 변제하기까지는, 저축은행이 어음소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제1항, 제2항의 경우에도, 제7조 제8항을 준용한다.<개정 2024.10.10>

제10조(저축은행으로부터의 상계등) ①기한의 도래 또는 제7조에 의한 기한전 채무변제의 무, 제9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채무자의 제 예치금 기타의 채권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② <삭제 2014.8.20>

③제1항에 있어서와 같이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사전의 통지나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채무자의 제 예치금을 그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환급받아서 채무의 변제에 총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대리환급 변제총당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한다.

④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예치금 기타 채권(이하 "제예치금 등"이라 한다)을 상계할 경우, 저축은행은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예치금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채무자와 보증인의 제예치금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제예치금 등의 명의인에게 통보한다. <신설 2003. 3. 3, 개정 2014.8.20>

⑤제1항에 의한 상계나 제3항에 의한 대리환급변제총당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보증인·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여야 하며, 채권·채무에 대한 이자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저축은행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또는 저축은행이 대리환급변제총당을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이 경우 기한 미도래 예금 등의 이율은 해당 예금 등을 가입할 때 저축은행과 약정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3. 3. 3, 2014.8.20., 2020.2.12.>

제11조(채무자로부터의 상계) ①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와를 그 채무의 기한 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만기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상계할 경우에는, 채무자는 어음금액에서 환매일로부터 만기일까지 할인료 상당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매채무를 지고, 이를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이 타인에게 재양도중인 할인어음에 관하여는 상계할 수 없기로 한다.

③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상계통지에 의하기로 하며, 상계한 예금 기타 채권의 증서·통장은 이미 신고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 곧 저축은행에 제출하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④제1항, 제2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채무의 이자·할인료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상계통지가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또한 기한전 변제에 관한 특별한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르기로 한다.

제12조(어음의 제시·교부) ①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저축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총당을 할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한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한다. 제11조에 의한 상계에 따

른 어음의 처리도 같다. <개정 2003. 3. 3>

②저축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아니하여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03. 3. 3>

1. 저축은행이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저축은행이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③제10조, 제11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곧 이행하여야 할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하여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④저축은행이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저축은행의 변제 등의 충당지정) ①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축은행이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 환급변제충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한다. 그러나 저축은행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②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채무 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또는 기타법률이 정하는 법정충당순서에 의한다. <개정 2003. 3. 3>

③변제 또는 상계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제예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상환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한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한다. 이 경우 채무자의 지정이 이미 연체된 채무를 제외하고 기한 미도래 채무에, 또는 무담보채무를 제외하고 유담보채무에 충당하는 등 저축은행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저축은행은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할인어음의 결제가능성을 고려하여 저축은행이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3. 3. 3>

④저축은행이 변제충당순서를 법정충당순서와 달리할 경우에는 저축은행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나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채무자의 상계충당순서지정) ①채무자가 제11조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계에 충당한다. <개정 2003. 3. 3>

②채무자가 제1항의 지정을 아니하거나, 제1항의 충당지정에 의하면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에 준하여 저축은행이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③ 삭제 <2003. 3. 3>

제15조(위험조항·면책조항) ①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저축은행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등 저축은행의 책임없는 사유

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저축은행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가 저축은행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저축은행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된 후 상환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②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손상·멸실의 경우에 저축은행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기로 한다. 다만, 저축은행이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종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저축은행이 부담하기로 한다.

④저축은행이 어음이나 제 증서 등의 인영·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어음·증서 등과 도장·서명에 관하여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며, 채무자는 어음 또는 증서 등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16조(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①채무자는 거래에 필요한 채무자의 명칭·상호·대표자·주소 등과 인감·서명을 저축은행이 정한 용지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기로 한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인감·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다.

②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저축은행에 서면, 전화, 팩스, 기타 전자적 수단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31>

제17조(자료의 성실 작성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저축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기로 한다.

[본조신설 99.8.25]

제18조(통지의 효력) ①저축은행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 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채무자가 제16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되거나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보며, 개인금융채무자의 계좌별 대출원금이 3천만원 미만인 개인금융채무자의 기한전의 채무변제 통지에 대해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3.3.3., 2024.5.8., **2024.10.10**>

③저축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9조(회보와 조사 등) ①채무자는 그 재산·경영·업황 또는 융자조건의 이행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저축은행의 청구가 있으면 곧 회보하며, 저축은행이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장부·공장·사업장 기타의 조사에 임할 경우에는, 협조하기로 한다.

②채무자는 그 재산·경영·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청구가 없더라도 저축은행 앞으로 곧 통지하기로 한다.

③저축은행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회보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채무자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부실여신의 보유,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을 파견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내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제20조(여신거래조건의 변경) ①저축은행은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시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을 조정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변경할 수 있기로 한다. <개정 2020.12.3.>

②채무자는 제1항에 의하여 여신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여신거래조건을 적용하기로 한다.

③채무자는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변경을 서면, 전화, 팩스, 기타 전자적수단의 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기로 한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적정성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 앞으로 곧 통지하기로 한다.

[본조신설 99.8.25] <개정 2018.4.20.>

제20조의2(법정 최고금리 변경사항 반영 등) 저축은행은 채무자와 약정한 금리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동법 시행령」(이하 “법령”이라 한다)의 개정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개정 법령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약정금리를 법정 최고금리까지 인하하기로 하며, 변경된 금리는 인하일로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채무자에게 금리를 인소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SMS, E-mail 등으로 금리인하 사실을 통보하기로 한다.[본조신설 18.11.1]

제21조(이행장소-준거법) ①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한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저축은행의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한다.

②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 될 법률은, 채무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 이 아닌 경우라도 국내법을 적용한다.

제22조(약관·부속약관 변경) ①저축은행이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저축은행의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변경내용(기존 채무자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여부, 신·구대비표 등)을 게시하여 채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즉시 게시(최소 1개월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21.3.12., 2022.8.30>

1.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약관 변경권고(명령)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경우
2. 약관 개정이 고객에게 유리한 경우
3. 변경 전 내용이 기존 고객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4.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

②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의 약관변경 내용에 대하여 제1항의 게시 외에 서면·전자우편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1개월 전까지(제1항 제1호·제2호의 경우 즉시) 개별통지(신·구 대비표 포함) 하여야 하며, 제1항 제3호·제4호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개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2022.8.30>

③저축은행은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전자적 수단 등 의사표시의 확인이 가능한 수단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게

시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5.31.> <개정 2021.3.12.>

④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제3항의 게시·통지내용 포함)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전자적 수단 등 의사표시의 확인이 가능한 수단에 의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저축은행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5.31> <개정 2021.3.12.>

⑤저축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약관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5.31>

제23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저축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혹은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저축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저축은행이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정 최고금리 변경사항 반영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내용은 약관 시행일 이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대출약정에 한하여 적용하기로 한다.

수 입
인 지

여 신 거 래 약 정 서

(기업용, 가계용)

※ 본 여신거래약정서 중 제3조, 제4조,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 내용은 가계용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 2018.11.26.>

○ ○ 상호저축은행 앞 년 월 일

본 인 _____ (인)
주 소 _____

상호저축은행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약정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 ○ 상호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합니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약약합니다.

제1조 (거래조건)

- ①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방식이 수 개로 되어 있는 경우 저축은행 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내에 “√”표시합니다.) <개정 2014.8.20., 2016.12.19., 2018.1.31., 2019.12.5., 2022.2.3., 2024.9.5., **2024.10.10.**>

여신과목 (여신종류)		거래구분	<input type="checkbox"/> 한도거래 <input type="checkbox"/> 개별거래
자금용도			
여신(한도)금액	금 원	계좌번호	
여신개시일	<input type="checkbox"/>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저축은행 승인일	여신기간만료일	<input type="checkbox"/> 년 월 일 (1회전기간 개월) <input type="checkbox"/> 여신일부터 년 월 일

이자율 등	<input type="checkbox"/> 고정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3조제2항 제1호 선택)	<input type="checkbox"/> 변동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3조제2항 제2호 선택)	지연배상금률 : 대출이자율 + 연 ()%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제5항 적용) 최고지연배상금률 : 연 ()%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연 %	<input type="checkbox"/> 기준금리() + 연()% <input type="checkbox"/> 금리변동주기 ()개월	
이자 및 지연 배상금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여신기한 전 상환수수료	대출이 상환기일 이전에 상환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하기로 합니다. 단, 여신기한전상환수수료는 대출개시일로부터 ()년 이내 상환시 적용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한전상환대출금액 x ()% x (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한도 거래여 신 수수료	택 1	<input type="checkbox"/> 한도약정수수료 : 여신약정한도금액 x ()%를 제6조에 따라 지급 합니다. <input type="checkbox"/> 한도미사용분(약정한도평잔-운용기간 중 여신평잔) x 미사용수수료 율 x 운용기간(일) ÷ 365(윤년은 366)를 제6조에 따라 지급합니 다.	
여신실행방법	<input type="checkbox"/> 여신개시일에 전액 실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증빙서류나 현물등에 의하여 저축은행이 자금 용도와 필요금액을 확인하고 분할 실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청구가 있는 대로 실행합니다.		
상환방법	<input type="checkbox"/>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매 ()일 마다 분할 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매월 ()일과 ()일에 분할 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매 ()개월 마다 대출 해당일에 분할 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자유로이 상환하되, 1회전기한 만료일 또는 만료일 전에 일시 전액 상환하며,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분할 상환하는 경우 여신개시일로부터 ()년 ()개월 ()일 동안 거치합니다. ※ 저축은행 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 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지급시기 및 방법	<input type="checkbox"/> 매 ()월 마다 대출해당일에 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분할상환원금 상환일 또는 월적립금 납입일에 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담보 예금등의 이자지급일 또는 이자원가일에 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어음할인일에 어음기일 전일까지 선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저축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저축은행 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 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금 등의 납입특약	부금 등의 적립금을 약정에 따라 계속 납입합니다. 다만, 그 적립금의 납입을 ()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상계특약	계약금액내대출에 대하여 관련 부금의 적립금이 계속하여 4월이상 연체되는 경우는 여신기간만료일 이전이라도 저축은행은 통지에 의하여 관련 예금과 대출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의 거래방식에 있어서 한도거래라 함은 약정금액 및 거래기한 범위내에서 대
출과 상환을 자유롭게 하기로 하는 것을 개별거래라 함은 대출한 금액을 여신기간만
료일에 일시 상환하거나 거래기한까지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한도거래의 경우는 제1항의 여신기간만료일 이내에서 1회전기한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제2조 (지연배상금)

①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기일의 다음 영업일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개정 2016.12.19>

②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9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발생 포함)에는, 여신기간 만료일의 다음 영업일 또는 기한의 이익상실일의 다음 영업일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개정 2016.12.19.>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금융채무자의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본인과의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신설 2024.10.10>

④계약금액내대출의 경우 상계전일까지는 지급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상계후에는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개정 2016.12.19., **2024.10.10**>

⑤종합통장대출의 경우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는 것은 제1조에서 정한 한도금액 이내로 하며, 한도금액 부족으로 원금에 가산되지 못한 이자 등으로 한도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결산기준일 다음 영업일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개정 2016.12.19., 2019.3.6.,**2024.10.10**>

제2조의2 (여신기한전상환수수료)

① 본인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초 약정한 대출기일(기한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일 포함. 이하 같음) 이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제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기한전상환수수료를 저축은행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대출잔여일수 등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대출잔여일수’는 상환방법에 관계없이 대출기간에서 최초 대출개시일로부터 기한전 상환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2.‘대출기간’은 대출실행방법에 관계없이 최초 대출개시일로부터 약정기일까지의 일수로 계산하되,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을 약정기일로 적용합니다.

③ 기한전상환수수료는 최초 대출개시일로부터 최대 3년(기한연장 포함)이내에서 저축은행이 정하는 기간까지 적용합니다.

[본조신설 2019.12.5.]

제3조 (차용총액 확정 및 분할상환기일표 통지)

①분할 실행하는 여신의 경우, 채무총액은 최종의 실행후에 확정되며, 확정방법은 분할상환기일표 및 영수증 기타 증빙자료에 의합니다.

②계약금액내대출과 급부금을 제외한 분할상환 여신의 경우, 저축은행은 확정된 채무총액에 대한 분할상환기일표를 작성하여 채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4조 (감액·정지)

①한도거래 및 분할 실행하는 여신의 경우,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또는 본인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여신거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저축은행은 통지에 의하여 제1조의 여신(한도)금액을 줄이거나, 거래기간에

불구하고 여신실행을 일시 정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은 감액으로 말미암은 한도초과 금액은 한도 초과된 당일 갚기로 합니다. <개정 2016.12.19>

②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 여신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곧 감액·정지를 해소하기로 합니다.

제5조 (종합통장대출에 대한 약정)

①이 약정에 의한 채무가 있는 때에는 종합통장기본계좌(이하 “모계좌”라 합니다)에 입금된 자금(증권류의 금액은 결제될 때까지 이 자금에서 제외하며, 입금된 증권 등은 이 약정에 의한 채무의 담보로서 저축은행에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은 자동적으로 대출금변제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②모계좌에 대해 그 잔액을 초과해서 지급청구하거나, 정기적 지급금 및 각종 요금 등의 자동납부 청구가 있는 때에는 모계좌를 통하여 대출금을 지급하거나 자동납부 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삭 제> <2019.3.6.>

④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모계좌에서 빼거나 제1조의 한도금액 이내에서만 대출금에 더하기로 하며, 한도금액 부족으로 원금에 가산되지 못한 이자 등으로 한도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발생한 당일 갚기로 합니다. <개정 2016.12.19., 2019.3.6.>

⑤대출의 이자계산은 매일의 마감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당일중의 최고 잔액이 당일중의 개시잔액 또는 마감잔액보다 클 경우에는 개시잔액과 마감잔액 중 큰 금액을 최고잔액에서 차감하여 그 차액을 마감잔액에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연체좌에 대하여는 매일의 최고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⑥종합통장대출의 경우 1회전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저축은행은 1회전기간 만료일을 통지하고 연장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1회전기간 만료일까지 연장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저축은행도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신기간만료일 이내에서 자동적으로 직전의 1회전기간만큼 거래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 <개정 2016. 8.11>

제6조 (한도약정 수수료 또는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

① 한도거래의 경우 차주는 한도약정 수수료 또는 약정한도 미사용 수수료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제1조의 여신(한도)금액을 설정하거나 여신(한도)금액 중 미사용금액에 대하여 따로 정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개정 2017.8.11.>

1. 한도약정수수료 : 한도약정금액×수수료율×약정기간(일)÷365(윤년은 366)

(한도 증액시 : 증액금액 × 약정수수료율 × 잔여 약정기간 ÷ 365(윤년은 366))

2. 약정한도 미사용 수수료 : 한도미사용분(약정한도평잔 - 운용기간 중 여신평잔)×미사용수수료율×운용기간(일)÷365(윤년은 366)

※ 약정한도 미사용 수수료는 월별로 산출합니다

가. 운용기간 중 여신평잔은 전월 이자 결산일 익일부터 금월 이자 결산일까지 매일의 적수에 대한 평잔입니다.

※ 매일의 적수 : 마감잔액 + (일중 최고잔액 - (개시잔액 또는 마감잔액 중 큰 금액))

나. 약정한도 미사용 수수료율은 한도사용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한도사용율(%)	0~30% 이하	30% 초과 ~70% 이하	70% 초과
미사용수수료율(%)	한도미사용 수수료율 100%이내	한도미사용 수수료율 70%이내	면제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한도거래 약정시(신규, 만기연장, 재약정 포함) 지급하거나 사전에 협의한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전문개정 2024.9.5.]

제7조(인지세의 부담)

- ①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은행과 채무자(또는 설정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개정 2011.8.1>
- ②<삭 제> <2011.8.1>
- ③ 채무자가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의2에 따라 대출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신설 2016.12.19.> <개정 2022.2.3.>

제8조 (담보·보험)

본인은 저축은행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약정에 의해 실행된 여신으로 건설 또는 설치된 시설물을 그것이 설치된 토지·건물 및 그 안의 기타 시설과 함께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 저축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저축은행이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에 저축은행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합니다.

제9조 (담보권 설정)

- ①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에 표시한 예금 등에 질권을 설정하고 저축은행앞으로 그 증서(통장)의 인도를 마칩니다.
- ②제1항의 질권의 효력은 원금·수익권(이 계약 이후에 적립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수익의 수익권, 특별장려금, 법정장려금 등에 미칩니다.
- ③제1항의 질권은 그 목적인 예금 등이 기한연장·개서·갱신·분할·병합·증액·감액 또는 이자원가된 경우에도 그 위에 질권의 효력이 미침을 승인합니다.
- ④저축은행은 제1항에 의한 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저축은행의 채권과 아래 표시의 예금 등을 상계 또는 대리환급 변제충당을 할 수 있습니다.

■ 질권의 목적인 예금등의 표시 :

종 별	증서(계좌) 번호	명의인	금 액 (계약액)	. . . 까지 입금누계액	증서일자	지급기일

제10조 (상환자력 유지의무 등)

- ①본인은 이 거래약정으로 말미암은 채무의 상환자력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한 재무비율을 유지하기로 합니다. 그 밖에 재무구조개선약정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 거래 약정의 끝부분에 이를 붙이고 그 내용은 이 거래 약정의 일부로 봅니다.

구 분	20 .	20 .	20 .	20 .	20 .
부채비율	%	%	%	%	%
자기자본비율	%	%	%	%	%
()비율	%	%	%	%	%
()비율	%	%	%	%	%

②본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저축은행과 협의하기로 합니다.

1. 합병, 영업양수도 및 중요한 재산의 매각·임대
2. 이 거래약정에 따른 자금용도 외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3. 타인의 채무를 위한 보증
4. 신규사업 진출 또는 해외투자
5. 기업구조 개선 작업(Work Out) 또는 사적화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③본인은 저축은행이 이 거래약정의 사후관리상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청구하는 경우 그에 응하기로 합니다.

1. 보유 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각
2. 지배주주의 출자
3. 유상증자 또는 기업공개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본인과 저축은행간에 각 항별로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11조 (자료의 제출 등)

본인은 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7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매 시기별로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기타 여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저축은행의 요청이 있는 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1. 매분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합계잔액시산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개정 2017.8.11.>
2. 매반기 : 반기결산보고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합계잔액시산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개정 2017.8.11.>
3. 매 년 :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결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정관, 근로소득세징수액집계표, 사업계획서, 추정 재무제표(3개년), 주요거래처현황, 각종 인허가 및 기술인증관련 서류사본(KS, ISO, 특허권 등), 노사분규확인서, 기타 제품설명서, 동업계 참고 자료 등
4. 수 시 : 합계잔액시산표, 자금용도확인서류 등 <개정 2017.8.11.>

제12조(자금용도와 유용시 제재조치) ① 본인은 대출금의 용도와 유용시 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관련 조항 및 그 절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해당여신을 즉시 상환)하여 할 의무를 집니다.

② 자금용도와 유용 사후점검 대상인 여신은 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

③용도와 유용 1차 적발시 해당여신 상환일로부터 1년까지, 2차 적발시 해당여신 상환일로부터 5년까지 (신규 여신 취급이 제한) 됩니다. [본조신설 2018.11.26.]

제13조 (기타 특약사항) <개정 2018.11.26.>

	본 인	(인)
--	-----	-----

제14조 (입금 의뢰) <개정 2018.11.26.>

본인은 이 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다음과 같이 입금하여 줄 것을 의뢰합니다. 이 경우
입금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면 본인이 부담합니다. [본조신설 2016.12.19]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입금금액			

본인은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대출상품설명서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
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개정 2008.1.14., 개정
2016.12.19>

본 인	(인)
-----	-----